

위조품 방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관리 절차서

진 테 크 주 식 회 사

1. 목적

본 절차서는 (1) 거래업체로부터 조달받는 원부자재, 중간재 및 제품에 대한 위조품 사용을 방지하고, (2) 당사가 개발·제조한 부품 및 완제품, 그리고 조달 활동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점검·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본 절차서는 당사가 구매, 입고, 사용, 개발, 제조 및 출하하는 모든 원부자재, 부품, 중간재, 완제품 및 관련 기술자료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위조품: 정품으로 승인되지 않았거나 원산지, 제조사, 규격, 성능 등을 허위로 표시한 제품
- 지식재산권(IP):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상표권, 디자인권, 저작권, 영업비밀 및 기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
- IP 침해 점검(FTO, Freedom-to-Operate): 당사 제품·기술이 제3자의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사전에 조사·확인하는 활동

4. 책임과 권한

1. 구매담당자: 승인된 거래처를 통해 구매를 진행하고, 공급업체의 정품 보증 및 IP 미침해 확인서를 확보한다.
2. 품질담당자: 입고품의 규격·상태를 확인하고 위조품 의심 사례를 조사한다.
3. 법무/지식재산담당자: 신제품 개발 및 주요 조달품에 대한 제3자 IP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, 침해 의심 시 대응방안을 수립한다.
4. 연구개발/생산담당자: 신규 부품·완제품 개발 시 특허 등 선행 IP 조사를 요청하고, 승인된 자재·기술만 사용한다.

5. 관리절차

5.1 조달품 위조품 점검

- 거래처 관리: 원부자재, 중간재 및 부품은 승인된 거래처를 통해서만 구매하며, 신규 거래처 등록 시 사업자등록증 및 정품 공급 능력을 확인한다.
- 입고 검사: 입고 시 품명, 규격, 수량, 표시사항을 발주서 및 도면과 대조하며, 정기적으로(분기 1회 이상) 핵심 자재에 대한 위조품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.
- 이상 발견 시: 해당 품목을 격리·보관하고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며, 공급업체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다. 필요 시 반품·폐기하고 거래처 등록을 재검토한다.

5.2 자사 제품·기술의 제3자 IP 침해 점검

- 신제품 개발 단계: 부품 및 완제품 설계 확정 전, 관련 특허·디자인·상표에 대한 선행기술조사(FTO 검토)를 실시한다.
- 조달 단계: 외부 업체로부터 도면, 부품, 솔루션 등을 조달할 경우 해당 공급업체가 제3자 IP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보증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근거자료를 확보한다.
- 정기 점검: 주요 양산 제품에 대해 연 1회 이상 제3자 IP 침해 가능성을 재검토하며, 신규 등록된 경쟁사 특허 등을 모니터링한다.
- 침해 의심 발견 시: 즉시 생산·판매를 중단 검토하고, 법무담당자가 침해 여부를 분석하여 설계 변경, 라이선스 확보 등 대응방안을 수립한다.

5.3 고객 및 제3자 기술자료 보호

- 고객의 도면, 기술자료 및 설계자료는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
- 제3자의 특허, 상표,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임직원에게 주의 의무를 부여한다.

6. 기록관리

다음 기록은 3년 이상 보관한다.

- 발주서 및 거래처 등록 자료
- 입고검사 및 위조품 의심품 처리 기록
- 선행기술조사(FTO) 및 IP 침해 검토 기록
- 공급업체 IP 미침해 보증서

- 고객 기술자료 수령 및 관리 기록

7. 교육

구매, 품질, 연구개발 및 법무 관련 담당자는 위조품 식별 및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

8. 부칙

본 절차서는 2025년 01월 01부터 시행한다.

원본 파일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임직원들에게 공유된다.
원본의 출력 본은 참고용으로만 사용된다.